

한국 딸기 태국 수입절차 및 관세

1. 한국 딸기(HS code : 0810 00 00) 태국 수입 절차

1) 태국 식약청 등록

(가) Import Food License 신청

- 태국 수입을 위한 FDA 기본 등록
- 필요서류 : 1. 창고(저장소) 증명서
2. 창고 및 사무실 위치 약도
3. 창고 내부도
4. 법인등록증
5. 법인등기부등본
6. 법인국적확인서(DBD에서 발급)
7. 개인증명서

→ 등록 처리 후 Import Food License 발급

(나) LPI (License Per Import)

- 개별 수입 컨테이너(물량)에 대한 허가서
- 인터넷발급 신청 후 개별 수입에 따른 LPI 온라인 발급가능
- 필요서류 : 1. 회사로고 2. 법인등록증 3. 법인등기부등본 4. 신청인증빙서류

2) 농림부(Department of Agriculture) 수입 허가서

: 농산물 태국 수입을 위한 농림부 허가서

(가) 기본 회사 등록

- 필요서류 : 1. 법인등록증 2. 법인등기부등본 3. 관리자 신분증명서 4. 보증인 신분증명서 5. 증인(2인) 신분증명서

(나) 수입 품목 세부 신청

- (가)의 기본등록을 마친 후 개별적 수입 품목에 대한 허가서 신청의 자세한 절차를 다시 확인 받는다

※ 농림부 수입자 기본등록을 거치지 않으면 License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알려주지 않음.

3. 예외적인 상황

- 태국의 여건상 개별 수입자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음
 - 원칙적으로는 한국산딸기 수입 시 40% 혹은 33.50바트/kg의 관세를 지불해야 하지만, 개별적인 세관원의 접촉 혹은 다른 접근을 통해서 관세를 면제 받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이런 적용 받을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음
 - * 수입자는 이렇게 예외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상위의 관세를 지불한다고 계획하는 것이 좋음

※ 참조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

1. 태국농림부(Department of Agriculture)

www.doa.go.th

02-940-6670 to 128

2. 태국식약청(FDA Thailand)

www.fda.moph.go.th

02-590-7442

3. LPI(License per Invoice)

<http://food.fda.moph.go.th>

<http://logistics.fda.moph.go.th>

4. 태국 관세청(관세조회)

<http://igt.customs.go.th>